

◎ 제도안내 ◎

사업장설치·이전·변경·심사제도안내

▣ 노동부 ▣

본 시행안내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설치·이전·변경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 목 차／1. 관계법규상의 규정 2. 적용 대상업종 및 규모 3. 대상기계 또는 설비 4. 제출서류
5. 서류제출기한 장소 및 심사절차 6. 심사근거 기술지침 7. 심사결과 구분 재심사 및 서류보존 8. 시행일자 및 기타사항

관계법규상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 3532, '81.12.31) 제 35 조 (감독상의 조치)

-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그 공사착수 30 일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노동부장관은 제 1 항의 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의 착수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노동부령 제 17 호, '82.10.29) 제 52 조 (대상사업장의 종류)

- 전기사용 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가 300 킬로와트 이상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별표 6의 기계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 3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를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화학물과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プラス틱 제품제조업
 - 제 1 차 금속산업
 -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 사업주가 제 1 항의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 14 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 별표 6에 정하는 설비의 배치도면
 - 방호장치 기타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설비를 표시하는 도면

◆ 사업장설치·이전·변경심사제도 시행규정

(노동부고시 제 85-28 호, '85. 9.16)

관계조항에 의거 이하 통제도의 시행에 따른 세부 내용을 알아 봅니다.

적용대상업종 및 규모

◆ 사업장설치 · 이전 · 변경 적용대상업종

- 화학물과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 제품제조업 : 한국 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 71호, '84.1.26) 상의 중분류기호 35에 해당업종으로 세세분류는 83개
- 제 1 차금속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기호 37에 해당업종으로 세세분류는 33개
-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38에 해당업종으로 세세분류는 151개

◆ 대상규모

- 5인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가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장
- 정격용량의 계산은 기 설치한 사업장을 이전 · 변경 시에는 한국전력(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최대사용 전력을 의미
- 사업장을 설치하고자 할때의 정격용량은 설치할 사업장에 비치될 모든 기계 또는 설비를 운전할 때의 전력을 의미하고 마력으로 표시된 전기사용설비는 1마력을 0.7355킬로와트로 환산

대상기계 또는 설비

- ◆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크랭크프레스기 또는 액압프레스기로서, 크랭크프레스기는 기계프레스중 크랭크축등의 편심기구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크랭크프레스는 제외
- ◆ 용량이 1톤 이상인 금속 기타 광물의 용해로
-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설비,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5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설비는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

라한다) 별표 10의 위험물을 사업장설치

- 이전 · 변경 심사제도 시행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반응기, 증류탑, 흡수탑, 추출기, 혼합기, 침전분리기, 열교환기, 계량탱크, 저장탱크등의 용기본체 및 이것들의 용기본체에 부속된 밸브, 콕크, 판, 선반 및 자켓등의 부속설비
- 규칙 별표 10의 위험물을 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수량미만으로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이 2종이상이고 이들 사용수량에 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양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의 합계가 1이상인 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조설비

- 규칙 별표 10에서 규정한 위험물을 가열건조하는 것과 관계되는 설비로서 그내용 면적이 1입방미터 (m^3) 이상의 것
- 규칙 별표 10에서 규정한 위험물 이외의 물질(규칙 별표 4의 특정화학물질 또는 규칙 별표 14의 유기용제등)을 가열건조하는 것과 관계되는 설비로서 열원사용량이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상을 사용하는 설비
 - 고체연료 최대소비량이 매시간당 10킬로그램 (kg) 이상
 - 액체 연료 최대소비량이 매시간당 1입방미터 (m^3) 이상
 - 정격 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kw) 이상

◆ 이동식 이외의 아세틸렌 용접장치

◆ 이동식 이외의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 출 서 류

- 규칙 별지 제 14호 서식에 의한 사업장 설치 · 이전 · 변경계획신고서에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대상기계 또는 설비의 배치 도면 및 다음에서 정하는 기계설비별 추가 관계도면 및 도면첨부서류

◆ 동력프레스 (총 20 종)

관계도면	도면첨부서류
1. 동력프레스의 구조 또는 카다로그	1. 프레스의 종류 2. 압력능력
2. 형식검정에 합격한 동력프레스에 있어서는 형식검정에 합격표장의 사본	3. 스트로크 길이 4. 정지성능기구 또는 장치
3. 안전장치를 불인 동력프레스에 있어서는 당해 안전장치에 관계되는 형식검정합격표장의 사본 및 당해 안전장치의 구조도 또는 카다로그	5. 전환스위치의 종류 6. 크랭크프레스에 있어서는 가. 클러치의 형식 나. 브레이크의 형식 다. 매번 스트로크수 라. 다이 높이 마. 슬라이드조절장치 및 조절량 바. 오바런감시장치의 설치위치 사. 클럿치의 부착개소의 수
4. 위 제 2호 및 제 3호에서 규정한 동력프레스이외의 동력프레스에 있어서는 안전장치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또는 카다로그	7. 액압프레스에 있어서는 가. 슬라이드의 무부하시 최대하강속도 나. 관성하강치 8. 사용의 개요 가. 용도 (가공제품의 이름 및 가공공정개요) 나. 행정 (가공행정의수 행정마다의 작업 내용 및 이에 따른 유해 위험성)
5. 설치장소의 이웃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다. 가공 (가공물 주입 및 가공품 배출에 따른 위험성)
	9. 안전장치의 개요 및 그 성능
	10. 금형의 안전사항
	11. 슬라이드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기

관계도면

도면첨부서류

	구를 가진 것에 있어서는 그 성능 12. 작업공정개요 13. 기타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사항
--	---

◆ 금속 기타 광물의 용해로 (총 14 종)

관계도면	도면첨부서류
1. 당해용해로 및 주요한 부속설비의 구조도	1. 종류, 형식, 제조자 및 제조년월일 2. 취급금속 기타 광물의 종류 및 성상 (용점, 비점, 비율, 비중, 발화점, 폭발성, 반응성 등)
2. 설치장소의 이웃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3. 가열열원의 종류, 가열장치의 구조 및 가열방법
	4. 사용조건 (표준투입량 온도, 압력 등)
	5. 구조, 재질 및 주요치수
	6. 냉각장치, 산소흡입장치, 퍼트, 광재처리장기 타 주요한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주요치수
	7. 용융 고열물의 방지대책
	8. 화상등의 방지대책
	9. 작업공정개요
	10. 기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화학설비 (총 12 종)

관계도면	도면첨부서류
1. 당해화학설비, 주요한 부속설비 및 배관의 배치도와 구조도	1. 종류 형식 및 기능 2. 제조 혹은 취급하는 위험물의 명칭 및 성상 (용점, 비점, 비중, 증기압, 인화점, 발화점, 폭발한
2. 설치장소의 이웃의	

관계도면	도면첨부서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계, 폭발성, 기타 반응성 등 3. 사용조건 (표준투입 양 온도, 압력 등) 4. 구조, 재질 및 주요치수 5. 동력 장치, 압축 장치, 급수장치, 계측장치 등 주요한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주요치수 6. 배관의 구조, 재질 및 주요치수 7. 작업 공정개요 8. 기타 산업 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아세틸렌 용접장치 (총 13 종)

관계도면	도면첨부서류
1. 배치도 2. 발생기 및 안전기의 구조도 3. 발생기실의 구조도 4. 설치장소의 이웃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1. 발생기실의 바닥, 벽, 지붕, 천정, 출입구의 문 및 배기통 등에 관한 구조, 재질, 주요치수, 수용할 장치의 수 및 설치장소 2. 발생기의 종류, 형식, 제조자, 제조년월일, 개수, 구조, 재질, 주요치수 및 검정 합격증 사본 3. 안전기의 종류, 형식, 제조자, 제조년월일, 개수, 구조, 재질 및 주요치수 4. 청정기 등 기타 부속 기구의 명칭, 구조, 재질 및 재질치수 5. 카바이트 찌꺼기 그릇의 구조용량, 재질 및 위치 6. 작업 공정개요 7. 기타 산업 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가스집합용접장치 (총 12 종)

관계도면	도면첨부서류
1. 배치도 2. 안전기의 구조도 3. 가스장치실의 구조도 4. 설치장소의 이웃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1. 가스장치실의 구조 및 주요치수, 저장하는 가스의 명칭 및 최대 가스저장량 2. 가스집합장치의 구조 및 주요치수 3. 안전기의 종류, 형식, 제조자, 제조년월일, 개수, 구조, 재질 및 주요치수 4. 배관, 밸브, 기타 부속기구의 명칭, 구조, 재질 및 주요치수 5. 작업 공정개요 6. 기타 산업 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서류제출기한·장소 및 심사절차

- ◆ 관계서류는 사업장 설치, 이전, 변경에 따른 당해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마련하여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 근로감독과 또는 민원실에 제출
- ◆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는 관계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지시를 하고 관계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즉시 이송
- ◆ 노동부장관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심사를 수행하되 심사과정에서 사업장의 제출서류상의 노우하우 (Know-How) 등 관계 비밀은 절대 누설 금지도록 조치
- ◆ 심사결과는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통하여 대상 사업장에 통지

심사근거 기술지침

-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동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기술
상의 지침과 작업환경 표준

◆ 기계 또는 설비별 주요 기술 지침

기계또는설비명	주 요 기 술 지 침 명
1.동력프레스	1.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기준 (노동부고시 제 4 호 83. 3. 16) 2. 프레스절단기의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노동부고시 제 3 호 84. 1.20) 3. 동력프레스 기계구조 규격에 관한 기술상 지침 (노동부고 시 제 85-29 호 85. 9.16)
2.금속 기타광 물의 용해로	1.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 발 및 고열물접촉위험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노동부 고시 제 85-30 호, 85. 9.16)
3.화학설비 및 건조설비	1. 화학설비의 안전심사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노동부고시 제 85-32 호, 85. 9.16)
4.아세틸렌 용 접장치 및 가 스집합용접 장치	1.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아세틸 렌 발생기, 안전기 기타 부속 기구와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안전기 구조규격에 관한 기 술상의 지침 (노동부고시 제 85-31 호, 85. 9.16)

심사결과구분 · 재심사 및 서류보존

- ◆ 사업장 설치 · 이전 · 변경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계획 관계서류의 심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 공사착수허가 :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필
요한 조치완료

- 공사착수중지 : 기계 또는 설비의 설치
장소가 부적당하거나 기
타 공사허가시 중대한 산
업재해를 발생할 위험이
있을때

- 공사계획변경 : 기계 또는 설비가 근로자
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
준에 위반하여 그 개선대
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때

- ◆ 공사착수중지 또는 공사계획변경의 명령을
통지 받은 사업장은 그 원인을 제거한 후 관
계서류를 작성,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에게 제출
- ◆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은 관계서류를 노
동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재심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대상사업장에 통지
- ◆ 사업주는 사업장 설치 · 이전 · 변경 심사제
도와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

시행일자 및 기타사항

- ◆ 시행일자 : 86. 1. 1
- ◆ 기타 사업장 설치 · 이전 · 변경 심사 제도와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다음 기관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 근로기준국 산업안전과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94-1, 전화
: 676-8244)
-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 근로감독과 또는
민원봉사실

